# 보험금 청구서

## 1. 피보험자 및 청구 사유

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피보험자 | 성명 | | 주민번호 | | 휴대폰 | | 의료수급권자 여부 | ☐ 예 ☐ 아니오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청구 사유 | 유형 | ☐ 질병 *신체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<br>☐ 재해 *우발적인 외래사고로 다친 경우 | 세부유형 | ☐ 사망 ☐ 장해 ☐ 진단 ☐ 수술 ☐ 입원 ☐ 통원<br>☐ 실손 입원 ☐ 실손 통원 ☐ 기타 : |
| | 내용 (재해만) | · 일시 : 년 월 일 시<br>· 사고 장소 및 경위 : | · 자동차보험/산재보험처리여부 | ☐ 예 ☐ 아니오 |
| | 타사 실손 가입 여부 | ☐ 예 ☐ 아니오 | 실손 청구 대행 신청 | ☐ 예 ☐ 아니오<br>* 실손청구대행 신청을 원하시면 타사실손 가입여부 (□ 예) & 청구대행신청 (□ 예) 체크 후 실손청구대행 신청서를 삼성생명에 제출해주세요. |
| | 실손 통원 의료비 청구시 | 병명 | | * 통원(외래의료비/처방조제비) 청구시 병명이 2개 이상이면 영수증 상단에 각각 병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<br>* 추가 심사 필요시 병명 증빙서류 등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 |

※ 확인된 사고 내용과 관련해, 정상 유지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심사합니다.(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세부유형 상세 체크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)

## 2. 수령 정보 및 안내 방법

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익자 | 성명 | | 주민번호 | | 휴대폰 | | 실제 소유자 여부(수익자) | ☐ 예 ☐ 아니오 |
| | 주소 | | | | 이메일 | @<br>* 모든 계약 안내장 이메일 전환동의 ☐ 동의 | | |
| | 신원 확인증 | ·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: 년 월 일<br>· 운전면허번호 :<br>·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: 년 월 일 | | · 운전면허증 일련번호 :<br>· 외국인등록증 일련번호 : | | | |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령 방법 | 받으실 계좌 | · 은행명 : | · 예금주 : | · 계좌번호 :<br>* 외화보험은 외화계좌 |
| | 분할보험금 수령관련 | · 분할보험금 중 확정지급형은 지급해당일에 위의 계좌로 자동송금 되며 생존조건 지급형은 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 생존 확인(서류 제출 등)후 송금됩니다.<br>·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체크(오른쪽)가 필요하며, 이경우 약관의 이율로 할인된 금액이 송금됩니다. | | ☐ 일시금 신청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령 안내 | 진행 단계별 문자안내 | ☐ 신청 ☐ 미신청 |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안내 | ☐ 스마트 안내 (알림톡/LMS) ☐ E - Mail ☐ 우편 |

## 3. 보험금 지급을 위한 동의 및 필수 확인

**보험업법 제 95조의 2 제3,4항 등 법령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, 보험금 지급 과정의 단계별 진행사항을 위의 방법으로 안내 받는 것과 별지 "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"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.**

①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"보험금 지급절차 정보안내" 및 "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"를 확인해 주시고, 보험금 처리 단계별 안내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②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중 일부는 금융기관 위탁규정에 따라 "제3자(손해사정회사)"에게 위탁될 수 있습니다.

(필수) ☐ 확인

*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허위서류작성)는 범죄 행위로써,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*개인 EDD건은 별지의 '개인 고객정보 확인서' 문장 전체를 작성 및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*법인/단체 청구건은 별지의 '법인/단체 수익자 실제소유자 확인서'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단체계약자 명판 (직인)

20 년 월 일 수익자 (대리인): (인)

* 대리인 청구시 수익자와의 관계 :
* 임직원 컨설턴트 성명 : 사번 :

Samsung Financial Networks

삼성생명

# 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 동의서 [1/2]

귀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조회,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동의는 '보험금 청구'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 합니다.

'거래종료일'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(보험, 융자, 수익증권, 신탁, 퇴직연금 등)에 대한 "①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,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 662 조), ③채권 ·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"을 뜻합니다.

**본 동의서는 요약 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요청 하시겠습니까?** ☐ 예 ☐아니요

※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만 동의 해주셔도 됩니다.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(후견인)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 · 이용 목적 : 보험금 지급 및 심사(손해사정, 의료자문 포함), 보험사고 조사, 보험사기 조사, 지급 보험금 타당성 검토,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, 본인부담상한제 확인, 조사연구(지급 서비스 개선) 등

보유 및 이용기간 : **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 년까지**

- 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.
- 거래 종료후 5 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, 별도 보관합니다.

**수집 · 이용 항목**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고유식별정보 (4 개) | 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** | | | |
| |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☐ 동의함 |
| 민감정보 (2 개) | **피보험자의 질병 · 상해에 관한 정보, 보험사기조사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** | | | |
| | 위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☐ 동의함 |
| 개인(신용)정보 (18 개) | 일반개인정보(10 개) | 신용거래정보(6 개) | 공공정보(2 개) | |
| |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 | 보험계약정보 등 | 건강보험 가입유형, 건강보험료 (월) 납부액 | |
| |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☐ 동의함 |

*단, 공공정보의 경우, 실손급부 청구시에만 수집 · 이용되며, 그 외 상품 청구시에는 동의하시더라도 수집 · 이용되지 않습니다.

## 2. 제공에 관한 사항

**제공받는 자(25 개) :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금융거래기관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등**
**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,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, 보험금 지급 · 심사 관련 업무 지원,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업무 수행, 재보험금 청구, 보험금 지급 · 심사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(위 · 수탁 사무 수행 포함), 의료심사 및 자문 업무 수행, 소견서 발급, 진료기록 열람, 보험사기 조사, 지급 보험금 타당성 검토,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,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수행, 금융거래업무,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제공 등**
**보유 및 이용기간 :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**

*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[CISO 심의필 2023-050]

# 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 동의서 [2/2]

## | 제공 항목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유식별정보 (4 개) |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| | | | |
| |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민감정보 (2 개) |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, 보험사기조사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| | | | |
| |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개인(신용)정보 (16 개) | 일반개인정보(10 개)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 / 신용거래정보(6 개): 보험계약정보 등 | | | | |
| |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*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
*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 [www.samsunglife.com]에서 확인 가능)

## 3. 조회에 관한 사항

조회 대상 기관 (3 개) :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조회 목적 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등
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: **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**

## | 조회 항목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유식별정보 (4 개) |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| | | | |
| |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민감정보 (1 개) |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 | | | | |
| |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개인(신용)정보 (7 개) | 일반개인정보(2 개): 성명, 국내거소신고번호 / 신용거래정보(5 개):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 지급 정보 | | | | |
| |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피보험자** | (성명) | **친권자** | **(부)**(성명) **(모)**(성명) |
| **수익자** | (성명) | **후견인** | (성명) |

***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친권자 2 인의 경우 각각 기재하며, 다수의 수익자(다수의 상속인 등)의 경우 상기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 드립니다.**

신청일 : 20 년 월 일

**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**

[CISO 심의필 2023-050]

# 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[1/3]

귀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조회,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동의는 '보험금 청구'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 합니다.

※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만 동의 해주셔도 됩니다.
※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(후견인)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**수집 · 이용 목적**

- 보험금 지급 및 심사(손해사정, 의료자문 포함), 보험사고 조사, 보험사기 조사, 지급 보험금 타당성 검토,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
-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본인부담상한제 확인, 조사연구(지급 서비스 개선)
-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 관련 업무(이체 및 입출금 업무), 증빙서류 보존, 보험계약 유지 · 관리

**보유 및 이용기간**

- **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 년까지**
  - 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.
  - 거래 종료후 5 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조사, 보험사기방지 · 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, 별도 보관합니다.

* '거래종료일'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(보험, 융자, 수익증권, 신탁, 퇴직연금 등)에 대한 "①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,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 662 조), ③채권 ·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"을 뜻합니다.

**| 수집 · 이용 항목**

<table>
<tr><td>고유식별정보</td><td colspan="5">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</td><td>피보험자</td><td>☐ 동의함</td><td>수익자 ☐ 동의함</td></tr>
<tr><td>민감정보</td><td colspan="5">① 피보험자의 질병 · 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(건강검진 포함), 진단명, 기왕증 등)<br>②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경찰, 공공 · 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서류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,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(손해사정서 등) 포함)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위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</td><td>피보험자</td><td>☐ 동의함</td><td>수익자 ☐ 동의함</td></tr>
<tr><td>개인(신용)정보</td><td colspan="5"><table><tr><th>일반개인정보</th><th>신용거래정보</th><th>공공정보</th></tr><tr><td>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이메일, 전화번호, 국적, 직업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</td><td>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지급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</td><td>건강보험 가입유형, 건강보험료 (월)납부액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</td><td>피보험자</td><td>☐ 동의함</td><td>수익자 ☐ 동의함</td></tr>
</table>

*단, 공공정보의 경우, 실손급부 청구시에만 수집 · 이용되며, 그 이외 상품 청구시에는 동의하시더라도 수집 · 이용 되지 않습니다.

# 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[2/3]

## 2. 제공에 관한 사항

| | |
|---|---|
| 제공받는 자 | 공공기관 등 : 법원, 검찰, 경찰, 국세청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,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<br>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ㅣ 보험협회 :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등<br>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국내 재보험사, 외국 재보험사 국내지점, 공제사업자, 우체국, 당사로 부터 보험금 지급 · 심사(보험사고 조사 포함)를 위탁받은 자, 보험계약 유지 ·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(손해사정 업체)<br>금융거래기관 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, 당사의 이체의뢰 은행<br>계약관계자 : 보험계약의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(보험금 청구권자 포함)<br>기타 : 의료기관, 법률사무소 등 |
|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| 공공기관 등 :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<br>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<br>보험협회 : 보험금 지급 · 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)<br>보험회사 등 :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청구, 보험금 지급 · 심사,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(위 · 수탁사무 수행 포함),<br>금융거래기관 : 금융거래 업무 ㅣ 계약 관계자 :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<br>기타 : 의료심사 및 자문 업무수행, 소견서 발급, 진료기록 열람, 보험사기 조사, 지급 보험금 타당성 검토,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,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수행 등 |
| 보유 및 이용기간 |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 |

*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### | 제공 항목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유식별정보 |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| | | | |
| |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민감정보 | ① 피보험자의 질병 · 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진단명 등)<br>②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경찰, 공공 · 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서류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,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(손해사정서 등) 포함) | | | | |
| |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개인(신용)정보 | 일반개인정보 | 신용거래정보 | | | |
| |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이메일, 전화번호, 국적, 직업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 |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지급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 | | | |
| |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
*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 [www.samsunglife.com]에서 확인 가능)

# [필수]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[3/3]

## 3. 조회에 관한 사항

**조회 대상 기관**

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보험회사 등

* 조회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는 '2.제공에 관한 사항 – 제공받는자' 참고 바랍니다.

**조회 목적**

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 ·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· 심사

–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보험회사 등 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

**조회 동의의 효력기간**

– **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**

**| 조회 항목**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유식별정보 | 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** | | | | |
| |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민감정보 | **피보험자의 질병 · 상해에 관한 정보 (진료기록, 진단명 등)** | | | | |
| |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| 개인(신용)정보 | 일반개인정보 | 신용거래정보 | | | |
| | 성명, 국내거소 신고번호 |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지급 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 | | | |
| |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| 피보험자 | ☐ 동의함 | 수익자 | ☐ 동의함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피보험자** | (성명) | **친권자** | **(부)**(성명) **(모)**(성명) |
| **수익자** | (성명) | **후견인** | (성명) |

**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친권자 2 인의 경우 각각 기재하며, 다수의 수익자(다수의 상속인 등)의 경우 상기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 드립니다.**

신청일 : 20 년 월 일 **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**

#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| 구분 | 구비서류 | 세부내용 |
|---|---|---|
| 공통 | 보험금청구서(수익자 계좌번호 기재)<br>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<br>청구인 *신분증(내방시)<br>*신분증종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<br><br>※ 모바일, 홈페이지, FAX 등 사본접수 가능대상<br>– 청구금액 1,000 만원 이하(실손은 금액제한 없음)<br>– 단, 장해/진단은 피보험자=상해시 수익자 계약<br>사망은 사망시 수익자 지정계약에 한함 | **(상황별) 추가서류**<br>미성년자 혹은 종피보험자 : 가족관계확인서류(배우자·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 예)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등<br>대리인 청구시 : 위임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<br>재해사고시 :<br>1. 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자동차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<br>2. 교통사고 이외 재해사고<br>– 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<br>– 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<br>–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<br>– 기타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<br>3. 확인서류발급불가시 :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|
| 사망 |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<br><br>※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<br>※ 상기외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원본 첨부필요(사망사실기재) | **(사망 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서류**<br>상속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 등<br>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: 위임한 상속인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<br>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 : 미성년자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|
| 장해 | 후유장해진단서<br><br>※ 가입한 계약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| **(장해부위별) 추가서류**<br>팔·다리관절 :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기재<br>척추장해 : '05.4.1 일 이전 :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기재<br>'05.4.1 일 이후 :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<br>※ '99.2.1 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<br>**일반진단서로 청구 가능한 장해**<br>만성신부전 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(영구투석)기재<br>사지절단 : 수술명(절단부위명시)<br>인공관절치환 : 치환일자, 부위 기재<br>신장, 비장 적출 시 : 적출일자, 부위 기재 |
| 입원 |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기재) | 암입원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입원 또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확인되는 서류<br>입원간병인사용특약 : 입원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: 진료비세부내역서<br>간병인사용 : ①사용확인서(회사확인) ②카드전표/현금영수증 ③간병인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|
| 수술 | 진단서, 수술확인서 | ※ 신수술보장특약 N : 진료비계산서, 급여수가코드(EDI 포함) 명시된 진료비세부내역서 (회사양식의 급여수가코드(EDI 코드 포함) 확인서로 대체 가능) |
| 골절<br>통원<br>치료 | 진단서·입퇴원(통원) 확인서<br>※ 진단명, 일자 등 기재 필수 | **(상황별)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안내**<br>골절 : 골절 확진에 한함(의증 제외)<br>통원 : 정액통원(암/재해/특정상병)은 FAX 접수, 복사본 가능<br>치아치료 : 치아번호, 치료종류, 진단확정일 및 치료 종료일 기재 필수(진료기록사본 첨부필요) |
| 진단 | 진단서, 진단사실 확인서류 | **진단사실 확인서류**<br>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 : 조직검사결과지<br>백혈병 등 혈액암 : 골수검사결과지<br>간/폐/췌장암 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를 못할 경우)<br>*유방암, Stage CI 진단 (*22.4.1일 이후 가입상품에 한함) : 암 병기 명시된 서류(진단서/소견서)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(별첨)<br>※ 표기 방식 : 종합병기/개별 T,N,M(예 : 4기/T3N2M1), TNM 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<br>뇌졸중 : CT,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<br>심근경색 : 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)<br>※ 경도인지장애·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[돌봄로봇제공형] : 보험 보장 유형 선택 확인서(회사양식) |
| 해외 | –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<br>– 환자의 인적사항, 진단명,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,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<br>※ 고객님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가급적 영문(또는 중문, 일문)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

## 실손의료비 보상

| 입원 | | 구비서류 | 세부내용 |
|---|---|---|---|
| 통원 | 외래 | 진단서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세부내역서 | **서류 간소화대상**<br>실손입원 : 청구금액 50 만원 이하 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<br>실손통원(왜래,처방) : FAX 접수 및 복사본 가능<br>17.4.1 이전 계약 :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가능<br>※ 다음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– ① 비급여 5 만원 이상 청구시 ② 타사 실손계약 17.4.1 이후 가입자<br>*본인부담금 10 万 이하 : 보험금청구서에 병명만 기재(진단서 대체)<br>※ 본인부담금 10 万 초과시 병명확인서류(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) 필요 (단, 응급의학과·치과·한방과 진료 청구 건 제외) |
| | 처방 | 진단서,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| |

*본인부담금 : 외래, 처방 합산 / 동일상병 기준, 다수 건일 경우 일자별/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필요

※ 진단서外 대체 가능한 서류는 세부내용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**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※ 자세한 내용은 **삼성생명 홈페이지(http://www.samsunglife.com)**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
재해입증 서류 등, 문의사항은 **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**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※ 고객플라자 내방 가능 시간은 09:00~16:00(단, 현금성 업무는 15:30 까지)입니다.

Samsung Financial Networks

삼성생명

# 보험금 지급절차 및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(고객보관用)

## 보험금 심사 진행 과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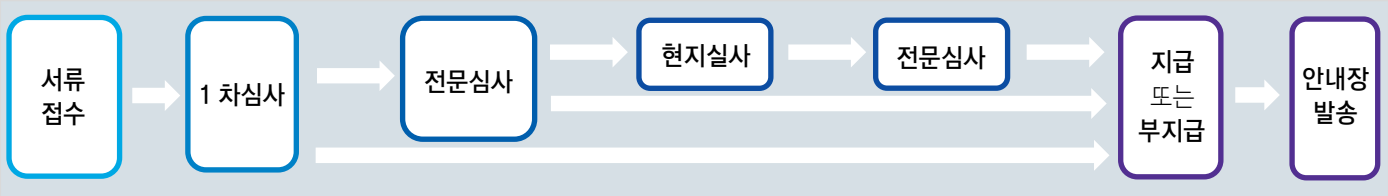


※ 보험사는 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,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3자(손해사정회사)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·조사·조회 및 제공·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※ 손해사정회사는 삼성생명에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,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※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

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보하게 되며,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,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발생시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 등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심사 지급기일은 3일 또는 10일 以內이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## 손해사정사(업자)의 손해사정서 교부의무

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,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
## 의료심사

장해, 진단급부 등 청구시 의료재심사 또는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, 이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.

## 보험금 가지급제도

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·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를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##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회사의 손해배상책임

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
##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(상법 제662조)

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반환청구권,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# 보험사간 실손의료비 비례보상

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
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또한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※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 ·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 본인부담금 상한제

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* 또는 사후*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
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회사는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* 사전 : 동일 병/의원 등에 입원해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병/의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
* 사후 : 당해 연도 여러 병/의원 등에서 진료 받고 다음해에 최종 합산해 본인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에게 환급

##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

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신 고객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* 또는 2종* 자격을 취득하셨다면, 할인신청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차상위 수급권자*의 경우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. (의료급여법 제8조 1항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만 할인 적용)

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신청시 실손의료보험(의료비를 실손 보장하는 주보험 또는 특약)의 영업보험료를 5% 할인 해 드리며 이후 납입하시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.

또한, 할인 신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취득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차액을 정산해드립니다. (자격취득일부터 자격이 유효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정산)

* 1종 수급권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근로무능력가구, 시설수급자,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), 타법적용자(이재민, 노숙인, 근로무능력자), 행려환자

* 2종 수급권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
* 차상위 수급권자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할인 적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)

## 진료비확인요청제도

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로 부담한 비용이 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.
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사망시 수익자 타인 지정건 청구시

사망시 수익자가 타인으로 지정된 개인보험 중 현장심사가 진행 될 경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따라서 현장 심사 진행시 지정된 수익자를 통해 피보험자 유족의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족의 동의가 없어 현장 심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, 지급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## 심사 진행상황 안내

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samsunglife.com)를 통해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청구서류와 관련한 사항은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손해사정 대상여부 관련 사항

보험사고에 의해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업법 185조 등에 따라 손해사정 대상입니다.

##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사항

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,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.

##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에 관한 사항

□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

-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
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삼성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
- 정당한 사유없이 삼성생명이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)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□ 계약자, 보험금청구권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

- 삼성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
-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